

	<h2 style="margin: 0;">동양미디어 운영규칙</h2>		규정번호	4-0-7
			제정일자	2012.11.23
	개정일자	2019.03.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따라 설치된 동양미디어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동양미디어에 학보사와 교육방송국을 둔다.

제3조(위치) 동양미디어는 본 대학 내에 둔다.

제4조(임원) 동양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주간교수 1인
2. 학보사 간사 1인
3. 교육방송국 간사 1인

제 2 장 학 보 사

제5조(목적 및 사업) 학보사는 대학 언론의 창달, 대학 내부의 의견 수렴과 건전한 대학 문화의 보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학보의 발간과 교내의 학술 문화 활동을 기획 주관한다.

제6조(조직) 학보사 발행인은 총장이 맡는다. 원활한 기구 운영을 위해 학보사에 주간 교수, 간사, 편집장, 정기자와 수습기자를 둔다.

제7조(임무 및 자격) ① 주간 교수는 학보의 발행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기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맡으며, 학보사의 행정 사무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3.01.>

③ 편집장은 정기자 중에서 선출되며, 학보사의 기자를 대표하고, 학보의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기자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수습기자 중에서 선출되며, 학보의 기사 작성 및 교내의 학술 문화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수습기자는 본 대학의 1학년 신입생 중에서 소정의 전형 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한 학기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기사작성 및 편집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제8조(내부 조직 구성) 학보사 내부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부, 기획부, 취재부, 섭외부, 문화부, 홍보부와 사진 보도부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 학보사의 운영은 학생경비로 지원하며 매 학기 발행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9.03.01.>

제10조(자격 및 임명) 편집장과 정기자는 매 학년도 2학기 초에 주간 교수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학생 기자(편집장, 정기자, 수습기자)는 학생 본연의 임무인 학과 수업에 충실해야 하며, 매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편집장과 정기자는 본 대학의 장학 규정에 의거한 봉사 장학금을 받는다. 단,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3.0에 미달된 자는 학생기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교육방송국 (D.M.B.S라 약칭)

제11조(목적 및 사업) 교육방송국은 국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학 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방송활동) 교육방송국은 제1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내 방송 보도
2. 대외적인 방송프로 참가
3. 민·관영 방송국 및 타 대학 방송국과 방송 자료 및 기술제휴 <개정 2019.03.01.>
4. 방송 기술의 연구개발
5. 기타 교육방송국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13조(정규방송) ① 정규방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편성으로 매학기 개강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매학기 말까지로 한다.

② 방송 시간은 점심 10분, 저녁 30분으로 하루 40분간 한다.

③ 정규 방송중 시험기간 일주일 전부터 3일전까지는 음악방송을 하고 시험기간 중에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단, 안내방송은 제외한다.

④ 안내방송은 학내외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정국원 합의하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3.01.>

제14조(실험방송) 정규방송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개강일전에 일주일간 실시한다.

제15조(특별방송) ① 공개방송은 방송제 및 행사달을 제외하고 정국원 합의하에 실시한다.

② 방송제는 정국원 합의하에 본 대학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03.01.>

제16조(제작부) ① 제작부는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을 담

당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 교육방송국 제작부장은 제작부에 관한 업무에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며 제작 국원의 통솔 및 교육을 담당한다.

제17조(보도부) ① 보도부는 뉴스 취재 및 인터뷰 프로 등 이에 따른 제반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며 진행한다.

② 교육방송국의 보도 부장은 보도부 관할 업무에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며 보도부 국원의 통솔 및 책임을 진다.

제18조(아나운서부) ① 제작자와 협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한다.

② 진행인 선정에 있어서 제작부에 의뢰하여 결정한다.

③ 교육방송국의 아나운서 부장은 아나운서 관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9조(기술부) ① 기술부는 방송 전반에 걸친 방송 기자재 수리 및 조정 등 기술 운영을 담당한다.

② 교육방송국의 기술부장은 기술부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기술부 국원의 통솔 및 교육을 담당한다.

제20조(국장) 국장은 본 대학의 총장으로 하며 방송 업무에 관한 조언과 국원을 임명한다.

제21조(주간교수) 주간교수는 본 대학 재직 중인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방송국의 연구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고 행정적인 일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간사) 주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국장이 임명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실무국장) ①실무국장은 정국원, 수습국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며 국장이 임명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3회에 걸쳐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 득표로 선출된다.

<개정 2019.03.01.>

② 실무국장은 각 부서원을 관장하고 방송국 국원들을 대표하며 다음과 같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장을 임명하며 방송에 관한 모든 실무의 책임을 진다.
2. 회의 및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에서는 의장이 되며 투표권을 갖지 아니하고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3. 대외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국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총무) 총무는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국장과 동일하며 실무국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제반 행정 업무를 맡는다.

1. 서류 일체의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육방송국의 예산, 국원관리, 대내적인 학생차원의 일을 관장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3. 실무국장에게 모든 제반 사항을 보고한다.

제25조(국원의 자격) 교육방송국의 국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정국원, 수습국원, 명예국원으로 구성된다.

제26조(정국원) ① 정국원은 실무국장 1인, 총무 1인, 각부서 2인 이하로 한다.

② 정국원은 수습국원 중 수습기간을 거쳐 방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국장이 임명한다.

③ 정국원은 선거권과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

④ 정국원의 임기는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9.03.01.>

제27조(수습국원) ① 수습국원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 공개 전형에 의해 (면접과 각 부서별 시험)선발된 자로 한다.

② 수습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학년 1학기말까지로 한다.

③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은 갖지 못 한다.

제28조(명예국원) ① 방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하여 명예국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교육방송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제29조(서기) 모든 회의기록을 하며 정국원 합의하에 실무국장이 임명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30조(자격상실) ① 정국원 임기중에 휴학 또는 재적의 경우 국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국원으로서 동양미디어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교육방송국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31조(방송운영위원회) 교육방송국은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하여 방송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실무국장과 각 부서장 및 부원으로 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방송국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공고
2. 기본 방송의 정책 수립 및 심의
3. 각 부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4. 기타 본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명예 국원 선발
6. 매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정기총회) 매학기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03.01.>

1. 실무국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하며, 정국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각 부서장은 방송 사업 및 관련사항을 보고한다.
3. 총무는 결산 및 관련사항을 보고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